

#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6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영옥, 박승진,  
박철성, 봉양순, 송도호,  
아이수루, 왕정순, 이병도,  
, 이상훈, 이영실, 이원형,  
정준호, 최재란, 황유정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보호구역 내 횡단보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 함(안 제7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교통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 ①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